

종합사회복지관 운영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
사업위치	
총사업비	총 (국비) (사비) (보조율) (구비) 78,042,110천원 78,042,110천원 0%
사업내용	○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, 운영비, 무료사업비 등 지원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
사업시행주체	자치구,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(종사자 교육)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자방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경상	투자				심의 (’16.10.14)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
지원형태	법령근거	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	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	적정
운영비보조	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	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복지정책과	신종우 2133-7310	오은미 2133-7336	진하정 2133-7338
복지본부	복지정책과	신종우 2133-7310	오은미 2133-7336	한영필 2133-7355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5년 예산액	2016예산액 (A)	2017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 69,384,975	(x-) 73,874,030	(x-) 78,242,110	(x-) 4,368,080	(x-) 5
시책추진업무추진비	(x-) 28,300	(x-) 28,300	(x-) 28,300	(x-)	(x-)
민간경상사업보조	(x-) 50,000	(x-) 70,000	(x-) 30,000	(x-) △40,000	(x-) △57
민간위탁금	(x-) 887,950	(x-) 943,581	(x-) 979,803	(x-) 36,222	(x-) 3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-) 68,380,625	(x-) 72,832,149	(x-) 77,204,007	(x-) 4,371,858	(x-) 6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사회복지 주요업무추진 28,300,000원 = 28,300천원
민간경상사업보조	○ 종사자 교육비 30,000,000원 = 30,000천원
민간위탁금	○ 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= 722,683천원
	- 종사자 인건비 = 722,683천원 722,683,000원
	○ 복지포인트 = 3,200천원 3,200,000원
	○ 사회복지관 운영비 = 125,000천원 125,000,000원
	○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= 2,520천원 360,000원*7명
	○ 기능특화운영비 = 40,000천원 40,000,000원
	○ 이동목욕사업 = 71,400천원 71,400,000원
	○ 시설개방지원 = 15,000천원 15,000,000원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= 62,512,408천원
	- 임대아파트내 사회복지관(28개소) 20,235,108,000원 = 20,235,108천원
	- 구립,법인직영 사회복지관(65개소) 42,277,300,000원 = 42,277,300천원
	○ 복지포인트 = 286,350천원 286,350,000원
	○ 사회복지관 운영비 = 9,273,304천원
	- 임대아파트 내(28개소) 3,003,904,000원 = 3,003,904천원
	- 구립, 법인직영(65개소) 6,269,400,000원 = 6,269,400천원
	○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= 174,960천원
	- 구립, 법인, 임대아파트 내(93개소) 360,000원*486명 = 174,960천원
	○ 사회복지관 특별지원(번동5,수유,중림,유락,중계9) 1,264,425,000원 = 1,264,425천원
	○ 상담소(2개소) = 175,960천원 175,960,000원
	○ 기능특화운영비 = 1,200,000천원 1,200,000,000원
	○ 이동목욕사업 = 1,356,600천원 1,356,600,000원
	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사업) = 195,000천원 195,000,000원
	○ 시설개방지원 = 765,000천원 15,000,000원*51개소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,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
-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

□ 사업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(보조금 등) 및 51조(지도 감독 등)
-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
 - 종합사회복지관 : 총 99개소 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94개소, 특별지원 5개소
 - 이용인원 : 일일평균 59,579명 (개소당 평균 608명)
 - 운영인력 : 총 1,666명 (개소당 평균 17명)
-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- 붙임문서 참조
- 사업기간 : 2017. 1~12
- 보조율
 - 시립 및 영구임대(SH, LH) : 시비 100%
 - 구립 및 법인 : 시비 90%, 구비 10% (사회복지관 기본인건비 및 운영비에 한하며, 기타 보조금은 전액 시비)
- '17년도 소요예산 : 78,042,110천원
- 사업내용
 - 1. 시책추진업무추진비 : 28,300천원
 - 2. 민간경상사업보조 : 30,000천원 (40,000천원 감액)
 - ▷ 사업내용 :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
 - ▷ 지원대상 :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
 - ▷ 산출단가 : 25,000천원*1,200명
 - [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: 민간위탁금979,803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77,204,007천원]
 - 3-1. 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인건비 [분담비율 시:구=9:1, 단 시립·영구임대 단지 내 복지관은 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(94개소) 종사자 총1,598명
 - ▷ 내용 : 기본급, 제수당 등
 - ▷ 단가 : 4급8호봉(평균호봉) 42,510천원(제수당, 4대보험, 퇴직적립금, 가족수당 등)
 - ▷ 기준 : 17명 (사회복지사 등 16명, 안전관리인 1명)
 - ▷ 소요예산 : 63,235,091천원(민간위탁금 722,683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,512,408천원)
 - 3-2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
 - ▷ 대상 :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(94개소) 종사자 총 1,598명
 - ▷ 단가 : 10호봉 미만 150천원, 10호봉 이상 200천원
 - ▷ 기준 : 17명 (사회복지사 등 16명, 안전관리인 1명)

- ▷ 소요예산 : 289,550천원(민간위탁금 3,200천원,
자치단체경상보조금286,350천원)
- 3-3. 사회복지관 운영비 [분담비율 시:구=9:1, 단 시립·영구임대 단지
내 복지관은 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(94개소)
 - ▷ 내용 : 직·간접 운영비, 시설장비유지비, 무료사업비 등
 - ▷ 기준 : 시설 면적별 5단계 차등지원 (단계별 7백만원, 95백만원 ~
123백만원)
 - ▷ 소요예산 : 9,398,304천원(민간위탁금 125,000천원,
자치단체경상보조금 9,273,304천원)
- 3-4.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[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보조금지원 종합사회복지관(94개소)에 근무하는 비정규직
종사자
 - ▷ 기준 : 1인 월 30천원, 시설별 최대 5명
 - ▷ 소요예산 : 177,480천원(민간위탁금 2,520천원,
자치단체경상보조금174,960천원)
- 3-5. 사회복지관 특별지원 [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5개소(번5단지, 중계9단지, 수유, 유락, 중림)
 - ▷ 내용 : 보조금 미지원되는 5개 사회복지관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
 - ▷ 소요예산 : 1,264,425천원
- 3-6. 상담소 [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2개소(생명의전화상담소, 사랑의전화상담소)
 - ▷ 내용 : 위기에 처한 시민대상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 상담을 통해
삶의 희망 부여(전화, 사이버, 자살위기 개입 등)
 - ▷ 운영인력 : 총 5명(생명의전화상담소 3, 사랑의 전화상담소 2)
 - ▷ 소요예산 : 175,960천원(1인 평균인건비 35,192천원)
- 3-7. 기능특화운영비 [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기능특화복지관 26개소 (노인특화 22, 장애인특화 4)
(’00년~)
 - ▷ 내용 : 노인·장애인 특화 프로그램을 60% 이상 운영하는
사회복지관에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
 - ▷ 소요예산 : 1,040,000천원(민간위탁금 40,000천원,
자치단체경상보조금 1,000,000천원)
- 3-8. 이동목욕사업비 [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이동목욕사업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20개소(’97년~)
 - ▷ 운영인력 : 복지관별 2명(1인당 지원단가 35,645천원)

- ▷ 소요예산 : 1,428,000천원(민간위탁금71,400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,356,600천원)
- 3-9.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[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 29개소 중 5차년도 16개소 제외한 13개소 ('13년~)
 - ▷ 기준 : 15,000천원*13개소(3차년도 8개소, 4차년도 5개소)
 - ▷ 소요예산 : 195,000천원
- 3-10. 시설 개방 지원 [전액시비]
 - ▷ 대상 : 평일 야간 및 토·일요일 주민 대상 시설 개방 종합사회복지관 52개소
 - ▷ 내용 : 근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(개소당 15,000천원)
 - ▷ 소요예산 : 780,000천원(민간위탁금 15,000천원,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65,000천원)

□ **추진경위**

- '10년 ~ '15년 : 사회복지관 운영비 범주 구분에 의한 차등 지원
 - 범주 구분 : 4가지 유형(“갑” 20%, “을” 30%, “병” 30%, “정” 20%)으로 구분
 - 범주 지표 : 인적자원50(인력규모40,인건비10), 표준사업비30, 평가결과20(복지부 평가결과)
 - 지원 방법 :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보조금으로 지원
- '16년 : 보건복지부 최소인력배치기준 권고안('15.6.12),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인력배치기준 및 운영지원 개선(안)
 - 인건비 : 기본인력제 및 정년제 시행 (안전관리인 1명 포함)
 - ▷ 직급별, 직능별 인력기준 마련(17명)
 - ▷ 안전관리인 호봉제 실시
 - ▷ 정년제 의무 이행 (종사자 60세, 시설장 65세)
 - 운영비 : 시설 면적별 5단계 차등 지급 (등급간 7백만원, 95백만원 ~ 123백만원)

□ **사업추진절차**

- 집행절차
 - 기본계획 수립(시) ⇒ 보조금 신청(시←자치구←종합사회복지관) ⇒ 보조금 집행(자치구) ⇒ 정산 보고(시←자치구←종합사회복지관)

□ **2017년도 추진일정**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계		78,042,110	
기본계획 수립	2017.01~2017.01	0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7.01~2017.12	78,042,110	분기별 신청 및 교부
보조금 집행 정산	2017.11~2018.01	0	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4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 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2개소 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2개소 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 ○ 복지건강공동체 지원 : 2개소 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5개소 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: 16개소
2015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 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2개소 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 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 ○ 복지건강공동체 지원 : 2개소 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6개소 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: 21개소
2016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: 94개소 ○ 복지관 특별지원금 지원 : 4개소 ○ 이동목욕사업지원 : 20개소 ○ 상담소 지원 : 2개소 ○ 기능특화 운영비 지원 : 26개소 ○ 기능전환특화(마을지향복지관) : 29개소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시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
- 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을 통한 복지관 만족도 증대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3	(x-) 65,176,679	(x-) 0	(x-) 0	(x-) 65,176,679	(x-) 64,957,656	(x-) 0	(x-) 219,023
2014	(x-) 67,051,139	(x-) 0	(x-) 0	(x-) 67,051,139	(x-) 66,657,126	(x-) 0	(x-) 394,013
2015	(x-) 69,603,648	(x-) 0	(x-) -300,000	(x-) 69,303,648	(x-) 68,293,151	(x-) 0	(x-) 1,010,497